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제1조(목적) 본 기준 및 절차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8조에 의하여 러셀인베스트먼트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가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규정시행세칙 및 기타 법령(이하 “관련법령”이라고 한다.)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자문”이란 금융투자상품등(법 제6조 제6항에서 정한 것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투자일임”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기본수수료”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자산 및 투자자문 자산 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약속된 수수료로 부과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계약자산의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부과하는 일종의 관리수수료를 의미한다.
4. “성과수수료”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계약 또는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준 종료일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5. “기준지표 등”이란 성과수수료를 수령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목표수익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지표 또는 회사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을 의미한다.

제4조(수수료 부과 기준)

-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함에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 ③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보수 및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상품의 비용과 수익의 기준 또는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제5조(수수료체계)

- ①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자문 계약 및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수수료 지급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1. 기본수수료만 지급
 - 2.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
- ② 회사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지되는 경우 투자자와 정한 바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부과 절차)

- ① 수수료는 관련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일임계약서 및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 계산방법, 수수료 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 ②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법령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설명 의무) 회사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47조 제1항 및 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광고) 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57조제2항 및 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고지) 회사는 법 제99조 제1항 및 법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보고서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협회에 대한 통보) 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의거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